

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285
------	-----

2007년 9월 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7년 8월 2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6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
(2007년 9월 3일 상정)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소방방재본부장 정 정 기)

□ 제안이유

- 가. 시민들의 재해·재난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시민안전체험관의 이용료를 무료화하고, 현행 하절기와 동절기로 달리되어 있는 시민안전체험관 개관시간의 일원화 등 시민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현행 하절기(3월~10월, 10:00~17:00)와 동절기(11월~다음해 2월, 10:00~16:00)로 구분된 체험관 개관시간을 현실에 맞게 10:00부터 17:00까지로 일원화 함(안 제3조제3항).
- 나. 체험관 무료 이용에 따라 매표시간 등 매표 관련 규정 정비(안 제3조제4항 내지 6항).
- 다. 모든 시민이 시민안전체험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용료 징수 규정 및 이용권 규정을 삭제 함(안 제8조 및 제9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(전문위원 : 김호연)

가. 개관시간 변경관련(안 제3조제3항 관련)

- 현재 시민안전체험관의 개관시간을 동절기 근무시간 등과 연계하여 하절기(3월~10월, 10:00~17:00)와 동절기(11월~다음해 2월, 10:00~16:00)를 달리하여 운영하던 것을 주5일근무제의 시행에 따른 동절기 단축근무제(퇴근 18:00 → 17:00)의 폐지에 따라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하·동절기 구분 없이 10:00부터 17:00까지로 개선·운영코자하는 개정사항으로 보여짐.

나. 시설이용의 무료화 관련 (안 제3조제4항 내지 6항, 제8조 및 제9조관련)

-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은 서울시민 누구나 쉽게 화재·지진 등의 위험성을 체험하고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피요령과 구조·구급실습을 통한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로 2003년 개관당시 이용시민이 일평균 461명 수준에서 점차 증가하여 최근에는 일평균 523명(적정이용인원 대비 87.2% 수준)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임.(※ 별첨 시설 및 이용자현황 참조)

<p><체험관 평균 이용인원 및 적정이용인원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07년(1~7월) 평균 : 평일 573명, 주말 423명 ○ 일일 적정 이용인원 : 600명(1회 200명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※실질 체험효과 및 수용 가능인원 고려 시</p>
--

- 현재 계층별 체험현황을 보면, 무료이용대상자 중 대부분이 12세 이하의 어린이(78.9%) 등이며, 유료이용대상자는 주로 어린이 보호자로 함께 참여하는 성인 등으로 전체 이용객의 15.8% 수준에 불과함.
- 외국(일본)의 경우는 일부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나, 타 시도의 경우 무료로 운영하

고 있거나 운영할 계획으로 있음.

- 또한 개관이래 연도별 이용료 수입 현황과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,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 용역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3억8천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데 비하여, 입장료수입은 연간 약 1천 4백만원 수준(투자대비 수익비율 약 3.7%)에 불과하므로,
- 금번 시민안전체험관 무료화는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한 공공시설의 이용 측면과 함께, 시민들의 재해·재난 등 긴급 상황 대처능력과 안전사고 경각심 등의 폭넓은 제고를 위한 공공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,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안희옥 위원 : 시민안전체험관 시설의 운영은 10시부터 하더라도 개관시간은 근무시간에 맞추어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는 것이 시민고객중심의 시설 운영이라 할 것임.

6. 토 론 요 지 : 생 략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(재석위원 10명, 전원찬성)

8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.....